상임이사·지원·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

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

일괄개정 2023. 12. 18. 지침 제412호

제1조(「계약사무처리지침」의 개정)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, 제18조제1항제9호 중 **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**로,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**“지원은”, 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는”, “본부”**로, 별표 4 물품의 검사 및 검수자표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을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를”**로, 별지 제2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, 별지 제6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, 별지 제16호서식 중 **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**라 한다.

제2조(「사내동호회 운영지침」의 개정) 사내동호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본문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3조(「유연근무제 등 운영지침」의 개정) 유연근무제 등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4조(「대여금운용지침」의 개정) 대여금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, 제17조제2항 중 **“주관부서장(지원의 경우 지원장)”을 “주관부서장(본부의 경우 본부장)”**으로, 제18조제1호 중 **“서울(서울지원)”을 “서울(서울본부)”**로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 중 **“실(지원)”을 각각 “실(본부)”**로 한다.

제5조(「도서자료관리지침」의 개정) 도서자료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**“지원을”을 “본부를”**로, 제9조제3항 및 제4항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, 별지 제5호서식 관리전환도서 이관 신청서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6조(「물품관리지침」의 개정) 물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, 제13조제1항 중 **“본·지원 간 또는 지원 간”을 “본원·본부 간 또는 본부 간”**으로, 제24조제1항·제4항, 제25조제2항·제4항 및 제33조제1항·제2항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7조(「사옥관리운영지침」의 개정) 사옥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나목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, 별표 1 및 별표 3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8조(「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」의 개정)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**“본·지원”을 “본원·본부”**로 한다.

제9조(「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지침」의 개정)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**“지원을”을 “본부를”**로 같은 조 제4호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10조(「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」의 개정)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11조(「입법사전협의제 운영지침」의 개정) 입법사전협의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**“지원을”을 “본부를”**로 같은 조 제5호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12조(「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」의 개정)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, 제5호 및 제6호 중 **“지원을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를”, “본부장”**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

제11호서식,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13조(「정보보안지침」의 개정) 정보보안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라 한다.

제14조(「차량관리운영지침」의 개정) 차량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**“지원의 관리책임자는 지원장으로 한다.”를 “본부의 관리책임자는 본부장으로 한다.”**로, 제9조제2항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, 제13조 본문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라 한다.

제15조(「촉탁변호사 운영지침」의 개정) 촉탁변호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촉탁 계약서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라 한다.

제16조(「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」의 개정)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중 **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**라 한다.

제17조(「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」의 개정)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**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제18조(「사택관리지침」의 개정) 사택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**“본지원”을 “본원·본부”**로, 제3조제1항, 제4조제1항, 제6조제4항부터 제5항, 제9조제1항,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19조(「성과관리지침」의 개정) 성과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같은 조 제6호 및 제9조제1항 중 **“지원을”을 각각 “본부를”**로, 10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**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20조(「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 운영지침」의 개정)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

확인 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21조(「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운영지침」의 개정)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**“지원”을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22조(「보안업무 운영지침」의 개정) 보안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**“지원을”을 “본부를”**로, 제4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**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”**로 한다.

제23조(「이해충돌방지위원회 운영지침」의 개정)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**“개발상임이사 및 업무상임이사”를 “보험수가상임이사 및 심사평가상임이사”**로 한다.

제24조(「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지침」의 개정)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**“개발상임이사”를 “보험수가상임이사”**로 한다.

제25조(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」의 개정)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**“지원을”을 “본부를”**로 한다.

제26조(「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의 개정)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별표 1 중 **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**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